

	교수업적평가위원회 운영규칙		규정번호	5-0-7
			제정일자	1996.06.04
	개정일자	2012.04.30		
	개정번호	Ver.8 총페이지	2	

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교수업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위원회는 동양미래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 전임 교수의 업적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본 대학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구성) 위원회는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총장이 본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전임 교수 중에서 임명한다. 단, 교학처장, 산학협력처장, 기획처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임원)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둔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하며, 간사는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1. 위원장은 위원의 업무 분장과 회의의 진행을 총괄하며, 회의 결과를 수시로 총장에 보고한다.
2.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회의를 위한 준비, 연락, 회계 등을 담당한다.
3. 위원장 유고시는 최 연장 위원이 그 직을 임시 대행한다.

제6조(회의) 위원회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를 두되, 정기 회의는 분기별 1회, 임시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2인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7조(활동) 위원회는 총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교수 업적 평가에 대한 기획, 평가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의 개정안 발의
2. 교수들이 제출한 평가 자료의 심의
3. 업적 평가 결과의 활용 방안 연구
4. 기타 교수 업적 평가에 필요한 제반 사항의 연구

제8조(의사 결정) 위원회 결정 사항은 재적 위원수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비밀유지) 각 위원은 교수 업적 평가용 자료 및 그 심의 결과중 제출자의 개인별 사항은 일절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제10조(기록) 회의 내용은 간사가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위원장이 총장의 결재를 득한 후

보관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기 시행된 위원회의 활동과 교수 업적 평가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